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7년 7월 23일(월) 15:00 ~17:4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
국제회의실(제주상공회의소 건물)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7년 7월 23일(월) 15:00 ~17:4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경제혁신센터 5층
국제회의실(제주상공회의소 건물)

『 진행 순서 』

- 등 록 : 14:30 ~ 15:00
- 인사말씀 : 15:00 ~ 15:10
- 기조강연 : 15:10 ~ 15:30
- 제 1주제 발표 및 토론 : 15:30 ~ 16:30
- Coffee Break : 16:30 ~ 16:40
- 제 2주제 발표 및 토론 : 16:40 ~ 17:40
- 폐 회 : 17:40

【 목 차 】

기조강연

//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 비전과 정책방향”

제 1 주제
발표 및 토론

//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 : 진단과 향후 과제”

제 2 주제
사례 발표

// “사회서비스 분야별 추진사례 발표”

◈ 기 조 강 연 ◈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 비전과 정책방향

발 표 : 진 영 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

◈ 제 1 주 제 ◈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 : 진단과 향후 과제

◇좌 장 : 김 진 영(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발 표 : 남 진 열(제주대학교 교수)
◇토 론 : 고 승 한(제주발전연구원
사회복지문화팀장)
김 경 환(서귀포일터지역자활센터장)
윤 정 웅(제민일보 서귀포지사장)
박 철 수(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

Ⅰ. 들어가면서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최근 제주지역의 언론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경실련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209개 세부 선거공약 1년 차 이행 및 달성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공약 성과 평균 점수는 50점이었다. 그 중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기 내에 새로운 일자리 2만개 창출에 대한 점수 역시 50점이었다. 다른 공약에서도 50점이 2개 더 있었지만, 전체 평균 점수와 일자리 관련 공약 평가 점수가 우연히도 일치하였다. 아마 통계적 결과는 아니지만 일자리 관련 공약 점수가 올라가야만 전체 공약 이행 및 달성도의 평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본 Workshop은 국가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오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과 불안정고용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면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제주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97년 말 IMF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도의 경제성장이 유지되어 왔지만, IMF 사태 이후 대량실업 및 계층 간 양극화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경제성장의 동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IMF 사태 이후 최근에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심각한 구직난(실업률),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등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증폭은 물론 근로의욕의 약화와 복지 욕구 증대로 연결된다.

참여정부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적 보상체계와 자활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참여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편으로는 혁신 및 경제성장, 다른 한편으로

는 약자의 보호와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근로를 통한 빈곤의 탈출을 유도하면서 소위 복지병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경제의 성장과 효율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동반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최근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지구경제화, 저 출산·고령화의 진전, 급속한 기술진전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출현과 동시에 양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증가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 노령건강, 노인 케어문제,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미숙련 노동자의 저생산성, 장기실업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저임금, 소득 양극화 문제 등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투자정책이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와 자기개발의 기회를 보장하여 누구든지 일을 통해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상향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통합,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투자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주효한 수단이며, 고용·보육·보건·문화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서비스 형태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박능후, 2007).

제주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본 발표문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와 사회서비스 고용현황을 전국과 제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는 본 발표문의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전병유 외(2003)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는 주로 유럽국가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대명(2006)은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도하며 실직빈곤층이나 장기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2006)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일자리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와 시장경제로부터 배제된 소외계층이 대안적 경제에 대한 모색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화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하는 취업촉진전략이 한계를 들어냄에 따라, 공공부문을 확대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3섹터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이인재, 2006).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IMF)에 따른 실업대란에 직면하여 정부와 비정부조직이 공공근로 민간위탁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라는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 냈으며, 2003년에 정책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공식 등장한 이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한상진, 200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재원부담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

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을 통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2004. 11. 10)'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고령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통합형과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고용형으로 구분되는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와 NGO가 공공·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유형과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을 통한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로 양분된다(김안나, 2005).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4).

첫 번째 단계는 서구의 사회적 일자리 개념을 한국사회에 소개하며 접합을 시도하는 시기로 1998년~2000년까지 약 3년간의 기간에 해당한다. 당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일자리 개념의 뿌리를 서구의 제3섹터 이론이나 유럽의 사회경제 이론에서 찾는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연구결과는 일련의 연구모임과 사회적 일자리 국제심포지엄(2000년 12월)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로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활용한 실험적 사회적 창출사업에 반영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시기로 2000년 10월부터 2003년까지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까지 개념화되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도영역으로 도입하는 시점으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사회적 일자리 개념을 자활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특히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나타났다. 물론 사업의 흐름은 공공근론 민간위탁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자활사업과 더불어 청소년자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원화되는 시기로 2003년 하반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노동부와 실업극복국민재단을 통해 확산되는 시점에 해당한다. 이는 자활사업 내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대상 집단을 달리하는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에게 자활지원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이 보다 자유로운 새로운 사업이 추진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논의는 공공부조제도와 무관한 독립된 고용지원사업의 형태로서 사회적 일자리 추진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크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참여자의 노동력을 일괄 구매하여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노동부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금을 지불하지만, 복지부 사업은 실직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노대명, 2006).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제공·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3~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6년까지는 공익형 사업·자립지향형 사업·고령자 적합형 사업·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광역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1]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공익형은 폐지하고 공모형이 신설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사업 참가자 1인당 월 임금을 70만

---

1)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공익형 사업 :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② 자립지향형 사업 : 사업자체에서 수혜자 부담 등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재원마련 방안이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사업성격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수익형 사업'을 '자립지향형 사업'으로 용어 변경)

③ 고령자적합형 사업 :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 20시간 이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 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⑤ 광역형 사업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혜자 부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체계로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원에서 2007년에는 77만원으로 10%인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07년에는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이인재, 2006; 국회예산정책처, 2006).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이 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기능습득과 근로능력배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조장하는 것이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영농·도시락·세차·환경 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6)[2].

2005년 12월 시점에서 242개의 자활후견기관, 439개의 자활공동체(2,302명)와 2,104개의 자활근로사업단(35,016명) 그리고 57,266 여명의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다(이인재, 2006).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사업의 목적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으로 구분하

---

2)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② 사회적일자리형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다.

③ 인턴형 :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업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④ 시장진입형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⑤ 자활공동체 : 자활근로 참여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자활근로 임금' 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기는 사업수익금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의미(이인재, 2006)

여 추진하고 있다[3].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지자체 주관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지자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보수(월 20만원, 7개월)를 지원하는 일자리가 2006년에는 8만개였으나 2007년에는 11만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취업알선, 노인적합 일자리 개발 등(노인취업지원센터,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시니어클럽의 자립사업단 운영)으로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2010년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 확충계획(Able 2010 프로젝트)에 의거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는 2,990명에게 복지형과 공익형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8년부터는 자립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확대할 계획이다[4](보건복지부, 2007).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노대명, 2006).

첫째, 공공부문이 사업비와 인건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현 일자리에서 자체적인 수익창출구조를 갖춘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망이 부재하다는 점

---

3)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② 교육형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
③ 복지형 :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④ 시장형 :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⑤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4)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복지형 :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예: 동료상담,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②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예: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③ 시장형 : 복지형·공익형을 제외한 일반시장 지향형의 모든 일자리(예: 사무보조, 세탁, 청소용역, 세차 등의 용역분야 일자리 등)

이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현재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초기 사업자금의 부족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족 문제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임금체계 또한 참여자의 자기개발노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

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국민의 욕구 충족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표 1> 사회서비스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과의 차이

구 분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근로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민간의 공급이 불충분	IMF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생계지원
정책 목적	신규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소득보전
고용 안정성/특성	지속적 / 봉사업무	한시적 / 단순 업무
노동수준	일정수준 교육이 필요	단순 노무
월 임금 수준	최저임금(83만원) 이상	20~30만원 수준

자료 :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2007)

원칙적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개선, 시장 형성,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지만, 재정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공급확충 및 구매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단기 미봉책이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사회서비스는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고 있는 공공부조와는 달리 일반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각 사회의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상이한 명칭과 상이한 내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시공간적인 배경에 따른 유동성을 갖고 있다. 각종 문헌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 보호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6).

2006년 9월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를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에는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공공재적 서비스에는 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의 서비스가 해당된다(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6).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합적 행동에 의해 제공되고, 서비스의 목적이 사회적 욕구를 겨냥하고 있으며,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이며, 또한 서비스는 재화 또는 생산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생산적인 자원의 투여로 상호작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즉, 인간 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목적을 둔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정경희 외, 2006).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을 살펴본다. 국제기준(OECD)에서는 서비스업을 서비스의 경제적 기능, 주요 수요자(기업/가계)의 차이, 자원배분에서 비시

장메커니즘의 활용 정도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로 분류된다.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의 일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데 비해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가계에 의해 직접 소비된다.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전자가 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되는데 비해 후자는 비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상의 4개 분야 중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의미한다(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김혜원 외, 2006).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들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N), 교육서비스업(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체(P), 그리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오락·문화·운동서비스(Q), 가사서비스업(S), 사업서비스업(M)의 일부가 포함된다(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김혜원 외, 2006).

<표 2> 사회서비스 영역의 분류

구 분	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 해당 직종(예시)
사회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
	O.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특수학교, 직업훈련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 복지시설
일부포함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개인 간병인 등
	Q. 오락·문화·운동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사적지, 식물원, 동물원 등
	S. 가사서비스업	가사도우미
	M. 사업서비스업	고용알선 등

자료 :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6)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공급주체는 정부, 민간, 제3섹터 등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서비스업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대인서비스로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다. 의료서비스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를, 중등교육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 고령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

교우위를 갖는다. 둘째,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care work)을 시장화, 사회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다지 높은 숙련도와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회서비스 중 교육, 의료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 대학 이상의 학력, 자격증 및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다(김혜원 외, 2006).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현황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은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행 중인 저소득층 임금 지원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가져 왔으나, 공공부문이 사업비와 인건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현 일자리에서 자체적인 수익창출구조를 갖춘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망의 부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시장과 충돌되는 문제에 대책의 취약성, 낮은 임금수준에서 비롯되는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이인재, 2006; 노대명, 2006).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우리나라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2006년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건강보험 34%, 기초생계급여 28%, 의료급여 27%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의 예산은 9%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보육서비스의 확충, 노인수발보험 도입 추진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사회투자형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민간시장에 의한 치료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간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직접적 의료인력 투자에 집중하여, 요양·간병 등 간접인력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였으며,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방문보건·정신건강, 만성병 관리 등 공공 보건의료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였다. 공공의

료비율의 경우 프랑스 64.8%, 독일 48.5%, 일본 35.8%, 미국 33.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8.5%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환경 등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낮은 구매력 등 유효수요가 부족하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고, 잠재수요가 큰 서민·중산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미비, 그리고 구매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상위소득계층의 경우 서비스 정보 부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미흡으로 서비스 구매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 형성 여건이 미흡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 인력 등 효과적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6).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IT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조정, 공장 해외이전 등 경제구조 선진화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10억 원 투자 시 고용인원이 1990년 64명에서 2001년 25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명 미만 수준이다. 둘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0.3%로 OECD 등 선진국 대비 10%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셋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 수 감소와 함께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보육·가사·방과 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환경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 수준은 크게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의 부족과 서비스 제공기반의 취약성이다.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결과 2005년 12월 기준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부족한 공급인력이 약 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욕구가 간절함에도 특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방과 후 활동(19만 8천명), 보육(14만명), 간병(13만

4천명) 등이다. 종합적으로 부족인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30만 4천명, 보건의료분야 24만 5천명, 교육분야 21만 4천명, 사회안전 및 기타 분야 8만 8천명, 문화·환경분야 6만 1천명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부족인력이 54만 9천명으로 전체 부족인력의 6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반의 미구축, 민간분야의 미발달이라고 하는 양적 및 질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6;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7; 정경희 외, 2006).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 극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 그리고 일자리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유형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으로 확대·개편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6).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목표를 살펴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공급인력 부족으로 추정되는 약 80만 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매년 20만개 수준의 신규 일자리가 확충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없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연간 10만개 수준으로 전망되며,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연간 1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약 20만 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표 3> 2007년 수요자별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만개)

구 분		여성	청·장년	노인·장애인
계	20.1	13.1	6.5	0.5
전문직	12.9	9.4	3.4	0.0
		보육교사, 간호사 등	문화예술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생태우수지역 조사원
비전문직	7.2	3.7	3.1	0.5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산림보호 감시원, 도시녹지 관리원 등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문화재 관리원 등

자료 :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2007)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현황

1.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1) 전국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지난 2000년 이래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은 고용을 동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5% 내외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낮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크게 하락하였고, 성장을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표 4> 2000년 이후 전국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7	4.0	5.0
생산가능인구	인구수	36,186	36,579	36,963	37,340	37,717	38,300	38,762
	증감인원	429	393	384	377	377	583	462
	증감률	1.2	1.1	1.0	1.0	1.0	1.5	1.2
취업인원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증감인원	865	417	597	-30	418	299	295
	증감률	4.3	2.0	2.8	-0.1	1.9	1.3	1.3
고용률		58.5	59.0	60.0	59.3	59.8	59.7	59.7
실업률	전체	4.4	4.0	3.3	3.6	3.7	3.7	3.5
	청년	8.1	7.9	7.0	8.0	8.3	8.0	7.9
경활상태	임금근로자비율	63.1	63.3	64.0	65.1	66.0	66.4	67.2
	·비정규직비율		26.8	27.4	32.6	37.0	36.6	35.5
	자영자비율	27.7	28.1	27.9	27.3	27.1	27.0	26.5
	비경활인구비율	38.8	38.6	38.0	38.5	37.9	38.0	38.1
저임금근로자비중		24.7	22.6	23.2	27.5	26.3	26.8	

주: 고용률 = 취업자 수/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박성재 외(2007)에서 재구성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8.5%의 경제성장률이 4.3%의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졌지만, 2006년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5.0%이지

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2006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1%p 증가하였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2005년 1.31%, 2006년 1.27%)하였다.

2) 제주지역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제주지역의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를 <표 4>의 전국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보다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실업률에 있어서도 전국의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2000년 이후 제주지역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가능인구	인구수	395	397	401	406	409	415	421
	증감인원		4	4	5	3	4	6
	증감률		1.0	1.0	1.2	1.0	0.7	1.4
취업인원	취업자수	261	264	271	281	278	284	289
	증감인원		3	7	10	-3	6	5
	증감률		1.1	2.6	3.6	-1.1	2.1	1.7
고용률		66.1	66.5	67.6	69.2	68.0	68.3	68.5
실업률	전체	3.0	2.6	2.2	1.9	2.5	2.5	2.1
	청년	6.5	5.1	5.3	4.9	6.6	6.1	5.5

주: 고용률 = 취업자 수/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그러나 제주지역의 실업률이 전국의 실업률보다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준기(2007)는 제주지역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많은 것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구미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는 실업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상

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셋째는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알선 기관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 근로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점 등이다. 역사적으로 제주지역의 실업률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위의 네 가지 요인 중 앞의 두 가지 이유가 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제주일보, 2007. 6.8).

2.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1) 전국의 사회서비스 고용현황

다음은 최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고용 비중과 실적을 주요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욕구의 빠른 증가를 반영하여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중 늘어난 연평균 332천명의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128천명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취업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의 11.2%이었으나, 해마다 소폭씩 증가하여 2006년에는 13.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3,14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5]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1만 8천불(구매력 기준) 당시와 비교[6]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사회서비스고용 비중의 정책적 의미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사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가 적절한 대책 추진 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력이 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성재 외, 2007;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2006).

반대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력은 약화되고 있다. 2000년 20.3%에서 2006년 18.0%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에는 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

5) 최근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 한국(2006, 13.6%), 스페인(2003, 18.2%), 뉴질랜드(2003, 22.7%), 영국(2003, 26.9%), 핀란드(2003, 27.3%)

6) 국민소득 1.8만불 당시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 한국(2004, 12.7%), 스페인(1996, 17.8%), 뉴질랜드(1997, 20.5%), 영국(1988, 21.2%), 핀란드(1993, 28.8%)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IT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조정, 공장 해외이전 등 경제구조 선진화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계수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10억 원 투자 시 고용인원이 1990년 64명에서 2001년 25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제조업 고용창출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7).

<표 6> 전국의 연도별 주요업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1,156 (100)	21,572 (100)	22,169 (100)	22,139 (100)	22,557 (100)	22,856 (100)	23,151 (100)
제조업	4,293.0 (20.3)	4,267.0 (19.8)	4,241.0 (19.1)	4,204.8 (19.0)	4,290.1 (19.0)	4,234.2 (18.5)	4,167.1 (18.0)
도소매음식숙박업	5,752 (27.2)	5,874 (27.2)	5,998 (27.1)	5,852 (26.4)	5,863 (26.0)	5,806 (25.4)	5,762 (24.9)
건설업	1,580 (7.5)	1,585 (7.3)	1,746 (7.9)	1,816 (8.2)	1,820 (8.1)	1,814 (7.9)	1,835 (7.9)
금융보험및부동산	1,103 (5.2)	1,141 (5.3)	1,147 (5.2)	1,174 (5.3)	1,191 (5.3)	1,243 (5.4)	1,286 (5.6)
사업서비스업	1,010 (4.8)	1,149 (5.3)	1,251 (5.6)	1,303 (5.9)	1,461 (6.5)	1,540 (6.7)	1,669 (7.2)
사회서비스일자리	2,377 (11.2)	2,421 (11.2)	2,588 (11.7)	2,779 (12.6)	2,868 (12.7)	3,005 (13.1)	3,145 (1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758 (3.6)	701 (3.2)	702 (3.2)	757 (3.4)	768 (3.4)	791 (3.5)	801 (3.5)
·교육서비스업	1,191 (5.6)	1,236 (5.7)	1,335 (6.0)	1,484 (6.7)	1,507 (6.7)	1,568 (6.9)	1,658 (7.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28 (2.0)	484 (2.2)	551 (2.5)	539 (2.4)	594 (2.6)	646 (2.8)	686 (3.0)
운수통신업	1,260 (6.0)	1,322 (6.1)	1,371 (6.2)	1,333 (6.0)	1,376 (6.1)	1,429 (6.3)	1,470 (6.4)
기타	1,404 (6.6)	1,392 (6.5)	1,239 (5.6)	897 (4.1)	821 (3.6)	779 (3.4)	673 (2.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2006년 원자료(통계청). 박성재(2007)에서 인용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은 근속연수와

임금수준으로 볼 때 다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개인서비스업)의 근속 기간은 각각 4년, 4.4년, 3.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산업 평균 임금수준(188.8만원)과 월급여액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131.만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180.8만원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 산업별 근속연수 및 월급여액

구 분	근속 연수(년)	월급여액(만원)
전산업	5.8	188.8
전기가스수도사업	13.7	301.5
통신업	11.5	268.0
금융 보험업	9.9	248.5
부동산 임대업	3.8	131.1
사업서비스업	4.0	202.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4	180.8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1	173.0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팀. “임금구조실태분석”. 2006, 삼성경제연구소(2006)에서 인용

2) 제주지역의 사회서비스 고용현황

다음은 제주지역의 최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고용 현황을 <표 6>과 비교하여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전국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와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 욕구의 빠른 증가를 반영하여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국의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역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즉,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즉,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21.5%에서 2006년에는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6년 동안 34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제주지역의 기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 및 어업의 경우에는 2000년에 26.8%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6년에는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송·통신·금융 등 산업별 전반적으로 취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제주지역의 연도별 주요업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61 (100)	264 (100)	271 (100)	281 (100)	278 (100)	284 (100)	289 (100)
농림, 어업	70 (26.8)	66 (25.0)	62 (22.9)	72 (25.6)	68 (24.5)	67 (23.6)	64 (22.2)
제조업	10 (3.8)	12 (4.6)	13 (4.8)	12 (4.3)	12 (4.3)	12 (4.2)	10 (3.5)
건설업	25 (9.6)	25 (9.5)	25 (9.2)	26 (9.3)	25 (9.0)	22 (7.8)	21 (7.3)
도소매,음식,숙박업	71 (27.2)	75 (28.4)	75 (27.7)	74 (26.3)	74 (26.6)	75 (26.4)	74 (2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6 (21.5)	59 (22.4)	66 (24.4)	69 (24.6)	72 (25.9)	81 (28.5)	90 (31.1)
전기,운수,통신,금융	29 (11.1)	27 (10.2)	29 (10.7)	28 (10.0)	28 (10.1)	27 (9.5)	30 (10.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2006년 원자료(통계청).

Ⅳ.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6년 5월 31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2006년 8월에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공약실천계획의 내용 중에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둘째, 노인일자리 5,000개 창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 장수의 섬에 걸맞게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공약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공약의 목표는 2010년까지 2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률 4%대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 일자리 5,000개 창출 공약의 목표는 2010년까지 노인 일자리 5,000개 창출이다. 공익형 55%, 교육복지형 30%, 자립지원형 15% 등 분야별 매년 1,200여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고 제주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과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서비스업의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관광, 문화산업과 더불어 지식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야 하고,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부문도 향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문은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나, 선진국들과 비교해 취업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확대와 질 개선을 위해서는 동 부문을 고부가가치형산업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둘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확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욕구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자리와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개발되어 온 서비스 일자리 등을 검토해 보면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되어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6; 최은영, 2007).

셋째, 사회서비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0년~2005년까지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에 포함된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1.3%와 -3.0%로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인 사회서비스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

기보다는 사회서비스 공급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의 강화가 요구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즉, 사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지역 내 신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기적 포럼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을 때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업 업무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담당자들 역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6.『일자리지원사업 평가』.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6.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 자료집.

_____. 200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 총괄보고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자료집.

김안나. 2005.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원·안상훈·조영훈. 2006.「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대명 외. 2004.「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노동부.

노대명. 2006.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월간복지동향 제88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부. 2006.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제75회 국정과제 회의 자료.

박능후. 2007.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집」.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

박성재·오민홍·홍현균. 2007.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정책과제-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1주년 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 자료집.

_____. 2007.「200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삼성경제연구소. 2006. “최근 일자리 창출의 특징과 향후 전망”.「SERI 경제 포커스」 제123호.

이인재. 2006.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도전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전병유 외. 2003.「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경희 외. 2006.「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주일보. 2007. 6. 8. “제주지역 실업률 수준이 낮은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2006.『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계획』.
최은영. 2007. “사회서비스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한상진. 2005. “실업·빈곤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전개과정”.「도시와빈곤」Vol.77. 한국도시연구소.

◈ 제 2 주 제 ◈

사회서비스 분야별 추진사례 발표

◇좌 장 : 김 진 영(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발 표 : 강 수 영(제주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 순 태(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 계장)
황 영 애(제주시니어클럽 관장)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보고 및 발전방향 모색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목 차

Ⅰ 2005 – 2006년 사업보고 및 성과

Ⅱ 우 수 사 례

Ⅲ 2007년 사업보고 및 추진계획

Ⅳ 운 영 현 황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제안사항

Ⅵ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1 사 업 보 고

2005-2006년

저소득,실직자 자녀 영유아 보육사업 및 방과후 공부방운영

사업유형 자립지향형 (수익형)

대상자 저소득층 영,유아 및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사업내용

제주지역,저소득, 실직자 자녀 및 취업을 위한 교육수강중인 자녀를 위한 서비스

- 종일, 시간탁아방 운영
- 방과후아동교실 및 방학교실 운영

2 2005~2006년 추진성과

재취업 기회 제공

영어독서논술지도사 과정 수료생중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여 방과후 아동교실 교사로 참여, 계약기간 만료 후 재취업의 기회제공

- 학교 방과후 아동교사 3명 취업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로 2명 취업
- 기타 관련 시설 및 타 업종 3명 취업
- 재계약 3명

보육서비스 질 향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적성및 흥미를 유발 참여도가 20%이상 증가 (서예,수영,컴퓨터,요가,영어독서논술, 한자 외)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로 보육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

- 총 544명
- 종일탁아 : 113명
- 시간탁아 : 272명
- 방과후아동교실 : 159명

3 2005-2006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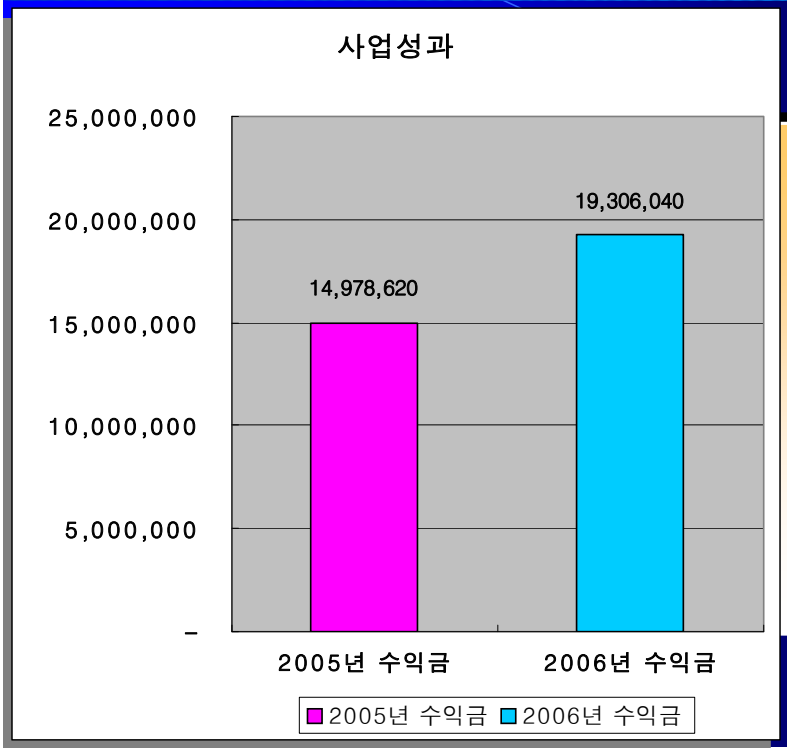

▶ 2005년 대비 2006년
⇒ 수익금 20%이상 증가

4 우 수 사 례

어린이 방학교실

운영목적

방학 중 가정에서 지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으로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지역의 아동들을 돌보는 사회서비스 제공

운영기간 2005년 8월 / 2006년 1월 / 2006년 8월 / 2007년 1월 (총 4회 실시)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오전 10시~5시)

이용금액 월 2만원

대 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교육내용

내 용 : 과목지도, 독서논술, 요가, 서예, 영어동화 , 한자자격시험 대비교육 외

(특별활동) 수영장, 눈썰매장 견학, 재활용센터견학, 목관아지견학, 영화관람 외

특별활동
과목지도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와이조아 사업단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1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저출산 문제,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을 통한 양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에 수눌음 자활교육관과 2007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방과후 교실의 중복운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위해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보육 서비스 실시

추진목적

1. 지역 현안의 필요욕구 충족 및 사회서비스 제공
2. 교육 ,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전문보육도우미 양성
3. 자립 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모색

2 사 업 개 요

2007년

사업명	시간제 보육지원사업단 “아이조아”
사업유형	NGO 단독형 (수익형)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자녀 (무료) / 맞벌이 일반가정 자녀 (유료) - 6개월 ~ 초등 3학년 까지
이용요금	○ 가정방문탁아 : 4시간 - 2만원 / 8시간 - 4만원 / 추가 1시간당 5천원 ○ 센터내 시간탁아 : 시간당 500원
사업내용	제주지역 저소득,실직자 자녀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보육지원 파견사업

- 돌보기 : 아기목욕, 이유식만들기, 기저귀 갈기 등
- 놀 이 : 연령에 맞는 동화책 읽어주기, 이야기 나누기, 창의력 향상놀이 및 지도, 인형만들기, 교구만들기 등
- 생활관리, 특별학습(논술,영어,수학 등) 지도.

3 사업추진일정

2007. 2 I 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2007. 3 I 노동부와 계약체결

2007. 3 – 4 I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모집 홍보 및 선발

2007. 4 I 사회적일자리 아이조아 사업 시작

2007. 4.10 – 5.10 I 참여자 교육

2007. 5.11 I 배치 및 활동

2007. 10 I 사업단 중간평가 및 워크숍

2008. 3 I 사회적일자리 아이조아 사업 종료예정

4 사 업 계 획

O 사업 기간 :
– 2007년 3월 1일 – 2008년 3월 31일

O 사업 규모 및 참여자 : 11명 취약계층 (10명 : 경력단절여성 / 1명 : 청년실업자여성)
– 총괄(1명), 시간탁아방(3명), 파견베이비시터(7명)

O 사 업 비 : 101백만원 (국비100%) + α (수익금 100%)
– 국 비 : 인건비 (노동부 100%) + 운영비 (수익금100%)

O 사업참여기관 :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O 사업단 참여자 교육내용 :
1단계: 기본소양 및 직업인의 자세, 이미지메이킹, 인간관계훈련 등
2단계: 영유아프로그램계획 및 초등학생 학습지도법, 놀이지도,이유식만들기, 아동발달전반적 내용 교육

O 근무조건 : 1일 8시간 (09:00-17:00) = 시간탁아 ,종일탁아, 외부 방문탁아
1일 (09:00-20:00) = 방문시간탁아
/ 근무외 추가수당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점심제공, 유급휴가 등

5 추 진 전 략

서비스이용자들의 지속적 이용과 수익창출 위한 마케팅 및 홍보전략

멤버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할인율 제공

월 3개월 이상 이용시 10%할인
시간탁아 10회 이용 1회무료

장난감, 동화책 대여

방문탁아시 발도르프인형 및 인체무해한 펠트장난감 대여
어린이 동화책 대여 서비스제공

월 평균 300만원이상 수익창출 목표

대상에맞는맞춤서비스제공

기존 파견 베이비시터와의 차별화

연령에 맞는 학습지도

미술,영어,율동,노래,창작만들기 등)

보육여자 교육실시 및 재교육으로 서비스질 향상

고객만족도조사(월1회,수시)

홍 보

-신문홍보(지역신문, Y신문), 현수막홍보

-홈페이지홍보(센터,관련기관)

-동사무소,지하상가 상인,주민 대상전단비

-수강생 이메일 홍보 및 인터넷 홍보

6 운 영 현 황

● 총괄 : 1명 / 탁아방 : 3명 / 파견베이비시터 : 7명

7 교 육 현 황

● 총괄 : 1명 / 탁아방 : 3명 / 파견베이비시터 : 7명

8 수익금 운영 계획

연 5천만원 수익창출목표

- 배상책임 보험가입
- 퇴직금 적립
- 복리후생비
- 추가임금 지급

서비스질 향상 및 참여자 근로의욕 증대

- 방문탁아시 장난감, 도서대여에 필요 물품 구입
- 놀이지도및 학습지도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구입
- 베이비시터 특별교육 및 재교육 실시운영비

9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사회적일자리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의 어려움	고 용 불 안	참여자의 마인드
– 수익창출의 어려움 – 퇴직금지급 (운영기관의 몫)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	- 사전 전문성 부족 -단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참여하거나 성실성,책임감 부분 미흡

10 제 안

현장배치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의식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서비스의 전문화 향상 필요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고용안정성 확보필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도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제공 및 협력체계 필요

11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제공

결혼,임신, 육아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가 단절된 여성들을 사회적일자리프로그램 참여로 재취업 기회제공,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유용인력 활용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증대기여

여성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서 시장수요에 맞는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

전문적인 양육 서비스 제공

아이조아사업단은 영유아를 돌보는 영역뿐만 아니라 놀이 및 학습지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플레이어 사업단 운영

양육부담 해소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모색

자립기반 마련과 지자체 및 기업 파트너쉽 구축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발전방향 모색

보육시설종사자 지원현황 및 처우개선방안

발표자 : 박 순 태(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보육담당)

Ⅰ. 문제제기

지금까지 보육서비스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것도 전체 시설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그에 따라 보육시설의 환경과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사이에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영유아보육사업이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에서 볼 때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야 말로 우리 보육사업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부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를 하고 있지만 9~10개월에 걸치는 인증과정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또 하나의 불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육의 질은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보육아동을 위해 현장에서 영양, 위생, 돌봄서비스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시설현황과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을 뒤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 모두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다소나마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Ⅱ.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반적인 실태

1. 보육시설 현황 (2007년 6월말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공립	법인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계	315	9	45	22	2	179	58

※ 법인, 법인외, 민간 각 1개소 휴지(총 3개소 휴지)

우리시 보육시설 315개소 중 공립시설 9개소를 포함하여 법인 등 84개소가 정부에서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민간 8개소 포함)하고 있으며, 39인이하 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정부에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 229개소로 전체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2. **종사자 현황** (2007년 6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기타 종사자
계	2,514	312	1,701	229	272
공립, 법인 등	1,006	76	689	117	124
민간보육시설	1,274	178	862	102	132
가정보육시설	234	58	150	10	16

※ 1) 보육교사 : 방과후 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2) 기타종사자 : 사무원, 관리인, 간호사, 기사

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2,514명의 종사자들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67.6%인 1,701명이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3. 근무시간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7:30부터 19:30까지 12시간, 토요일에는 오후 15:30까지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200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평일 하루 근무시간은 시설장 11시간 52분, 보육교사 10시간 32분, 취사부 8시간 39분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매우 길고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방학이 없는 시설의 특성상 많은 시설은 휴가가 거의 없어 일년에 고작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재충전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과중한 근무시간에서 오는 피로는 결국 영유아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무는 종사자의 근무의욕과 역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4. 2007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최종)	2007년도(당초)	증△감	비 율
계	34,533	42,311	7,778	22.5%
국고보조사업	31,519	38,047	6,528	20.7%
자 체 사 업	3,014	4,264	1,250	41.4%

우리시 보육예산은 423억원으로 제주시 전체예산(4,681억원)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액대비 22.5%가 증가되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20.7% 증액된 38,047백만원, 자체사업은 41.4%가 증액된 4,264백만원이다.

Ⅲ.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현황

1. 보수지급 현황

○ 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

(단위 : 월/천원, 명)

구 분	계	1,299이하	1,3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이상
계	1,006	541	243	157	47	18
시 설 장	76	5	1	20	32	18
보육교사	689	325	223	127	14	
취 사 부	117	100	9	8		
기타 종사자	124	111	10	2	1	

○ 민간보육시설

(단위 : 월/천원,명)

구 분	계	899이하	900 ~999	1,000 ~1,299	1,300 ~1,499	1,500 ~1,999	2,000 이상
계	1,274	448	303	342	61	80	40
시 설 장	178	24	4	25	21	64	40
보육교사	862	229	289	295	39	10	
취 사 부	102	87	4	11			
기타 종사자	132	108	6	11	1	6	

○ 가정보육시설

(단위 : 월/천원,명)

구 분	계	899이하	900 ~999	1,000 ~1,299	1,300 ~1,499	1,500 ~1,999	2,000 이상
계	234	78	92	33	5	19	7
시 설 장	58	12	5	10	5	19	7
보육교사	150	42	86	22			
취 사 부	10	10					
기타 종사자	16	14	1	1			

※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월 지급액 (노동부고시)	641	700	700	786
월 지급액 (도지사고시)	-	765	765	858

※ 1일 8시간 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현황을 보면 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은 보육교사인 경우 79.5%(548명)가 150만원 미만, 민간보육시설은 94.3%(813명), 가정보육시설은 100%(150명)가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보수는 정부지원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등의 호봉과 시설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인 경우,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 협의(근로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도보다 12.25% 인상된 최저임금(월 858,000원, 전국 평균 856,320원) 이상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시설에 따라 보수에 차이가 나고 있다.

2. 인건비 지원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인 경우 시설장은 인건비의 80%, 영아반 보육교사 80%, 유아반 보육교사 30%, 방과후반 교사 50%,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3개월)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보육교사, 취사부 각 1명에 대하여 추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미지원 시설인 경우 영아보육 활성화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영아기본보조금을 아동 1인당 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을 지원하여 시설에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3. 처우개선비 등 지원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인당 매월 6만원의 능력향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사부·운전기사 인건비(100~450천원)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4대 보험료(1인·월 30천원), 출산휴가 등 대체교사 인건비(월 60만원, 3개월까지)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수 체계 개선

시설에서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또한 적정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보수체계 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임교사, 원감에 대한 보수체계가 없어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장의 재량에 의하여 봉급이 결정되고 있다. 시설장 및 운영자의 재량에 의한 보수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능력향상비 상향 조정

현재 6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월 13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인 제주새싹플랜에 따라 2010년까지 월 10만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영유아보육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월 13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

3. 수당제도 현실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력자의 채용이 회피되지 않도록 교사수당 또는 담임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와 보육의 질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

농어촌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직무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보육아동 감소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농어촌지역만이라도 교통수당 또는 담임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시설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를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비는 시설별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는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육교사는 보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방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꾸준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시설과 함께 시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 종사자의 근무능률향상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종사자가 전문 보육인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업안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제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사례

발표자 : 황 영 애(제주시니어클럽 관장)

1. 시니어클럽 기관설립 경과

○ 2001년 6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CSC/ Community Senior Club) 시범 사업 개시 : 서울종로 등 5개소 1차지정
- 2002년 7월. 2차 지정 7개소로 총 12개소로 전국화 사업 추진
- 2002년 12월 3차, 2004년 3월 4차 제주시니어클럽 등 전국 29개 기관으로 확대
- 2007년 현재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전국 50개기관이 사업 진행

○ 시니어 클럽의 사업 목표

-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으로 국가의 생산성 제고
-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의 고령사회 기반 구축 모색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개발
- 노인도 일할수 있다는 사회적분위기 확산

○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라는 핵심 지향 가치를 지닌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3-2

○ 설립일 : 2004. 4. 1

2. 제주시니어클럽의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내 60세이상 어르신중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에 맞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적정한 일자리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입니다.

3. 사업추진 실적

○ 고유사업

구 분	사업단수		배정일자리		참여연인원	
	06년도	07년도	06년도	07년도	06년도	07년도 (6월말)
계	6	5	125	130	671	280
인력파견형	2	2	80	110	537	228
시장형	4	3	45	20	134	52

○ 위탁사업

구 분	사업단수		배정일자리		참여연인원	
	06년도	07년도	06년도	07년도	06년도	07년도 (6월말)
계	10	10	327	353	2,269	1,110
공익형	1	1	40	13	308	36
교육형	2	1	58	89	423	344
복지형	3	3	106	134	793	529
인력파견형	1	1	75	39	368	77
시장형	3	4	48	78	377	124

《“어르신” 적극 참여 사업》

공익형 및 교육복지형 사업으로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 상대적 근로여건이 양호한 노인일자리 사업

4. 사업 추진 성과

○ 지역사회에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및 노인일자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어르신”의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 대한 전산회원관리 : 1600명

○ 노인 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지급

5. 사업 추진 애로사항

○ 자립지원형(시장형 / 인력파견형)

- 예산운영(시장형 : 1년1인 115만원, 인력파견형: 1년1인 10만원)의 제한과 획일성으로 “어르신 적합직종에 대한 개발과 참여 유도가 어렵다.”
- 시장형 참여 어르신들의 인건비 지급 규정 모호와 구인 대상 업체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비용(인건비)에 대한 의견차이
- 시장형 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관련 업무처리 절차 복잡

6. 건의사항

○ 중앙정부 : “시니어클럽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으나(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시니어클럽의 존립 법적 근거가 모호한점

○ 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틀을 가지고 노인 고용에 관련된 전반에 관한 민・관 협치 구조속에서 지역의 노인인적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에서 일자리를 공급할수 있는 공공과 민간과 기타방면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몇자리나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세부적 지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구조 형성과 타지역 시니어클럽 운영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책 강구

◈ 부 록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007. 7.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 총26개사업 · 35,663백만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부처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인원(명)	실무자
		국비	지방비		
10개과, 16담당	**26개 사업(35,663백만원)**	18,643	17,020	3,495	21명
	〔복지청소년과〕				
복지부	·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832	356	공모중	강순자 2812
〃	· 지역 자활센터 운영	467	200	25	김영숙 2818
〃	· 의료급여 관리사 활동강화	117	29	8	〃
청소년위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	30	6	강현수 2842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00	600	24	고영훈 2844
	〔여성정책과〕				
여가부	· 아이 돌보미 지원	73	31	37	문경우 2887
	·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양육지원	76	-	10	
〃	· 장애자 가족아동 양육지원	58	-	17	〃
〃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0,715	10,715	1,716	김시중 2883
〃	· 민간보육 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2,433	2,433	775	〃
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84	432	41	백은숙 2884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44	67	6	고순심 2882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부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383	164	118	이혜숙 2828
〃	· 노인 돌보미 바우처	421	181	64	문영희 2827
〃	·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445	191	129	김지경 2838
〃	·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89	90	36	전병구 2834
	〔보건위생과〕				
복지부	· 방문보건사업	253	253	33	유인심 2933
〃	· 정신보건센터 운영	95	95	7	〃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06	51	199	고인숙 2932
	〔자치행정과〕				
행자부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21	21	6	김승배 2647
	〔정보정책과〕				
행자부	· 정보화마을프로그램 매니저	72	97	11	김태훈 2344
	〔문화예술과〕				
문화부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00	200	12	김정옥 3415
	〔스포츠산업과〕				
문화부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320	320	30	김우철 3463
	〔관광정책과〕				
문화부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	331	144	강상우 3323
	〔환경녹지과〕				
산림청	· 산림서비스 증진	51	22	5	강인보 6762
〃	· 산림보호 강화	258	111	36	오상훈 6763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사업의 정의

○ 지역특성·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선정·지원하며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32	356	-	-	-	-	-	-

□ 참여단체(공급기관 공모 심사중 : ·07. 7. 20)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 사업추진 효과

사업 실시 시기 미도래

□ 향후 발전방안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 사업의 정의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직업능력 향상 및 고용창출프로그램 운영 등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의 기반조성 지원

※ 사업시행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 업 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467	200	25	349	25	247 (53%)	102 (51%)	25

□ 참여단체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종사자인원	비 고
계	**4개 단체**		**25**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고은택	9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김경환	6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김효철	5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손재운	5	

□ 사업추진 효과

○ 집행실적 우수

- 지역자활센터 : 4개소 (제주수눌음, 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 자활공동체 : 10개소・74명 → 18개소・109명
  - 자활근로사업단 : 33개사업단・297명 → 38개사업단・328명
- 2006 자활성공율 평가(복지부 발표: 07.4.13) : 전국 3위 (748명 중 78명 성공 10.4%)

  ※ 1위 : 울산 (477명 중 66명 성공 13.8%), 2위 : 대전 (1,479명 중 159명 성공 10.8%)

○ 기타 사업 만족도 등의 우수사례

- 2007년 1월 SK복지재단에서 공모한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센터 공모사업」에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가 지원한 바 선정됨
- 실직 빈곤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결식이웃의 건강권 확보를 통한 풀뿌리 지역사회안전망 기틀 조성
- 기업 - 지자체 - NGO간 상생(Win-Win)의 파트너쉽 정착

□ 향후 발전방안

○ 지역자활센터가 빈곤근로가구의 탈빈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자활공동체 창업, 자활사업 확대 등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강화
  - 관련 조례 하반기 개정
- 시장진입형 사업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지역자활센터의 근무환경 및 시설이 열악하고,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직원보수가 낮은 편으로 보건복지부에 보수체계 인상 건의

의료급여 관리사 활동 강화

□ 사업의 정의

○ 의료급여수급자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전화·방문을 통한 상담 및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등 수행

※ 최초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 2003년 1월

– 확대 배치(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2004년 1월

○ 2006. 12. 31 의료급여수급권자 : 27,962명 (1종 14,802, 2종 13,160)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 업 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의료급여관리사 활동 강화	117	29	8	41	8	33 (28%)	8 (28%)	8

□ 참여단체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담당부서장)	종사자인원	비 고
계	**2개 행정시**		**8**	
의료급여관리사 활동 강화	제주시 사회복지과	강 왕 진	5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홍 관 일	3	

※ 시에서 직접 시행

□ 사업추진 효과

○ 의료급여의 혁신대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과중과 새로운 텔레케어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제주시가 선정되어 의료급여관리사 인원이 증원됨

- 제 주 시 : 2명 → 5명 (3명 증) **※ 텔레케어사업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
- 서귀포시 : 2명 → 3명 (1명 증)

□ 향후 발전방안

○ 2007. 7. 1자로 의료급여법령 개정으로 선택병의원제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등 달라지는 사항 홍보 강화

○ 초과급여 특별관리대상자 확대지정 및 사례관리 강화

○ 사회적 일자리 확대차원 및 의료급여 업무내실을 위해 도단위에도 사례관리사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사업의 정의

○ 위기 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심리·정서적지지,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청소년을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 업 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30	30	동반자 6명	30	6명	50	50	100

□ 참여단체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종사자 인원	비 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한샘(소장)	14명	

□ 사업추진 효과

○ 2007년 6월말 현재 동반자 6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위기청소년 총55명 (남자31명, 여자 24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았고, 현재 20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음.

○ 제공된 서비스는 총 599건으로 주로 지지상담(254)과 정보제공(137), 가족상담(54)과 식사제공 및 문화활동(68)등이며, 2명이 사후관리 중임.

□ 향후 발전방안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확대 필요.

○ 내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동반자 채용도 늘게 되어 사회적일자리 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정의

○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이, 저소득계층등의 증가에 비래해 방과후부터 부모님 귀가시까지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이 심각한 수준이며 방치되는 시간이 각종 청소년문제 발생원인 중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

○ 사업목표 : 각 아카데미에 3명 채용・어려운청소년 240명 지원

○ 사업내용

- 대상연령 및 인원 : 초등4학년~중등2학년, 개소당 40명
- 주요 프로그램(운영관리 : PM 1명, SM 2명)
- 지원시설 : 8개시설(청소년수련시설 6, 청소년단체2)

구 분	내 용	강사진 구성
기본공통과정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주요 과목), 자기주도 학습 등	대학생, 대학원생, 주부, 퇴직교사 및 지역사회 자원인력 활용
전문선택과정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	분야별 전문기능 수행가능자로서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
특별지원과정	부모 간담회, 가족 캠프, 부모교육 등	-
생활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등	-
운영시간 (일요일미운영)	평일 : 오후 3시~저녁 10시 토요일(등교일/휴무일) : 정오~저녁7시/아침9시~오후4시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예 산		인원
	국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600	600	24	776	24	64.5	64.5	24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8개시설		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4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대정청소년수련관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YWCA	고영의	3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오대수	3	
제주YWCA	제주YWCA	김정렬	3	

□ 사업추진 효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 등에 따른 자녀지도 공백 시간대를 방과 후 공적 서비스가 보완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문화적 결핍 보충은 물론, 청소년 문제 예방,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 사교육비 절감,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 등에 일조

□ 향후 발전방안

○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초등 4년~중등 2년으로서 수업 종료(21:00)후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은 귀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400천원/월으로 원할한 사업참여에 문제점이 있어 차량구입비(중형버스) 및 운전요원을 추가 지원요망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 사업의 정의

○ 0세(3개월) ~ 만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 가정에 부모가 올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73	31	37	12	11 (종사자 1명, 도우미 10명)	7%	3%	29%

※ 지원인원 11명

- 종사자(1명) : 인건비 지원
- 도우미(10명) : 가정방문 도우미 활동시 활동비 지급(시간당 5천원)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 여성아동 복지과장	1	서귀포여성회관 내 소재 함

□ 사업추진 효과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 경감 혜택으로 건강한 아동양육 문화 조성

□ 향후 발전방안

○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조정 : 일반가정(5,000원/시간당)인 경우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용요금 조정 ⇒ 3,000원/1시간당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 사업의 정의

○ 전문도우미를 양성하여 만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 아동의 학습 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의 이해 교육, 인성 발달 지원, 영양 지원, 양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결혼이민자 가족아동양육 지원	76	-	10명 (종사자 1명, 도우미 9명)	38	10 (종사자 1명, 도우미 9명)	50	-	100

※ 지원인원 10명

- 종사자(1명) : 별도 인건비 지원 없이 근무
- 도우미(9명) : 가정방문 도우미 활동시 활동비 지급(시간당 5천원)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소영	1	은혜빌딩 6층

□ 사업추진 효과

○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안정성 제고

□ 향후 발전방안

○ 종사자 인건비를 사업예산에 계상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 사업의 정의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만18세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애아** 양육 가정에 전문도우미를 파견하여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필요 시 장애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58	-	17	29	12	50%	-	70%

※ 지원인원 : 12명

- 종사자(1명) : 인건비 지원
- 도우미(11명) : 가정방문 도우미 활동시 활동비 지급(시간당 5천원)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한경욱	1	탐라장애인 복지관2층

□ 사업추진 효과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 향후 발전방안

○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대한 부담이 타 활동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활동비 상향 조정이 요구되며, 이동거리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활동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사업 목적

○ 취업부모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및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보육시설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10,715	10,715	1,716	10,584	1,538	49.3	49.3	89.6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	장미 어린이집 외 135개소		1,716명	

□ 사업추진 효과

○ 맞벌이 취업부모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확대 등 보육시설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 사업의 목적

○ 영아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사례 발생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2,433	2,433	775	2,222	742	45.7	45.7	95.7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한샘어린이집 외 283개소		775명	

□ 사업추진 효과

○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더불어 시설(운영비 부담완화),부모(보육기회 확대), 교사 (처우개선), 아동(서비스 수준향상)이 혜택 기대

□ 향후 발전방안

○ 현재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운영시 반 별 별도 1인 교사 배치되어 운영시 지원상황으로 향후 유아반 운영 시 지원확대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원

□ 사업의 정의

○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비	지방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84	432	41	360	31	47	42	77

※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당 2,000천원이 지원 됨

□ 참여단체 : 지역아동센터현황(별첨)

□ 사업추진 효과

○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호 및 교육 등 건전한 육성 도모

□ 향후 발전방안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연차별 확대 지원

※ '08년도 국고지원 신청 : 44개소('07대비 10개소 증)

<별첨>

지역아동센터 현황(37개소)

연번	단 체 명	대표자	종사자인원	비고
1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고은택	2	제주시
2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박동신	2	〃
3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신	4	〃
4	꿈꾸는공부방	제현우	3	〃
5	빛과소금지역아동세너	김동환	2	〃
6	홍익지역아동센터	김순실	3	〃
7	수정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강길선	4	〃
8	새순지역아동센터	허정례	2	〃
9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승종	2	〃
10	대화지역아동센터	김광수	2	〃
11	청수지역아동센터	최창환	3	〃
12	해바라기공부방	황호민	3	〃
13	우리하도공부방	양순선	3	〃
14	빙새기노형지역아동센터	김은정	2	〃
15	우도지역아동센터	박태식	2	〃
16	사랑의공부방	신상진	2	〃
17	종달지역아동센터	최남규	2	〃
18	그릿시내지역아동센터	최현모	2	〃
19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이상준	3	서귀포시
20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서계원	3	〃
21	무지개공부방	오효선	3	〃
22	중문지역아동센터	김만임	3	〃
23	대륜지역아동센터	최금일	2	〃
24	샘물공부방	최공칠	2	〃
25	비전지역아동센터	전희순	2	〃
26	보목지역아동센터	김연선	2	〃
27	대정지역아동센터	김성숙	3	〃
28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임문정	3	〃
29	신흥지역아동센터	석 건	3	〃
30	삼육지역아동센터	김영득	2	〃
31	신례지역아동센터	방순주	2	〃
32	위미지역아동센터	강은철	2	〃
33	풀빛세상지역아동센터	김대곤	2	〃
34	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양청자	2	〃
35	가마지역아동센터	안순홍	2	〃
36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김병기	2	〃
37	성읍지역아동센터	김정주	2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 사업의 정의

○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비	지방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4	67	6	50	6	46%	45%	100

□ 참여단체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은정	2	
	사회복지법인 홍익원	김순실	2	
	사회복지법인 제남	이상준	2	

□ 사업추진 효과

○ 시설보호 등 단체보호 위주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등 도모

□ 향후 발전방안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연차별 확대 지원

※ ‘08년도 국고지원 신청 : 5개소(‘07대비 2개소 증)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 사업의 정의

○ 독거노인의 사망 후 상당기간 지나서 발견 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사회적 접촉기회 필요성으로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시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집행액)	6월까지 지원인원 (6월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예산		인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383	164	118	75	111	13.8	14	94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111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김영호	74	
	서귀포 자활후견기관	김경환	37	

□ 사업추진 효과

○ 독거노인 현황조사 내용에 따른 독거노인 DB구축으로 독거노인 관리 체계마련

□ 향후 발전방안

○ 생활지도사의 인건비(월 60만원, 4대 보험료포함)를 월80~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 사업의 정의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421	181	64	68	6	11.3	11.3	9.4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6개단체		6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제주수눌음자활후견기관	고은택	1	
	이어도자활후견기관	김효철	2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양순옥	-	
	남제주자활후견기관	순재운	3	

□ 사업추진 효과

○ 재가에서 방치된 노인들 체계적인 보호 및 부양가족의 사회·경제적인 활동기회 부여

□ 향후 발전방안

○ 대상자를 일반노인까지 확대 및 노인요양점수 하향조정(40점 → 30점) 및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 사업의 정의

○ 사업기간 : 2007. 4. 1 ~ 12. 31

○ 사업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며, 활동보조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보장 마련

○ 활동보조인 선정기준

- 학력 제한 없이 만18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자 중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7,000원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 업 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445	191	129	39	40	6.1%	6.1%	31.0%

○ 활동보조인 신청 실적 : 123명 (계획인원 : 129명)

○ 활동보조인 기초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활동보조인 54명
- 교육기간 : 7. 16 ~ 9월말 (매주 월요일)
- 교육시간 : 총40시간 (이론과정20, 실습과정20)
- 주 관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동한)

○ 활동보조인 보수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근무시간이 1년 이상인 활동보조인 69명
- 교육기간 : 9월중
- 교육시간 : 총20시간

□ 참여단체 및 인원

○ 사업수행기관 : 4개소 (급여 미지급)

- 제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자활후견기관

○ 교육기관 : 1개소 (급여 미지급)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추진 효과

○ 서비스 대상 발굴(109명 신청) 및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시행(36명)

□ 향후 발전방안

○ 해당 지역내의 활동보조인 신청 저조로 장거리 파견시 현실적인 교통비 지원방안 시급

○ 국가의 전적 책임이던 공공부조에서 본인부담이 일부 수반되는 사회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신청자 저조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안정된 소득보장 미흡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 사업의 정의

○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예 산		인원
	국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89	90	36	-	-	-	-	-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제주시 사회복지과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사업추진 효과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 향후 발전방안

○ 올해 참여한 장애인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문보건사업

□ 사업의 정의

○ 건강취약계층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방문보건사업	253	253	33	162	33	32%	32%	100%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방문보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1	
	제 주 보건소		11	
	북 부 보건소		8	
	서귀포 보건소		6	
	남 부 보건소		7	

□ 사업추진 효과

○ 건강취약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및 도민건강 수준 향상

□ 향후 발전방안

○ 고령사회 도래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 상담과 안내 등으로 사업전개

정신 보건센터 운영

□ 사업의 정의

○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해소 및 도민인식 제고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정신보건센터 운 영	95	95	7	85	7	48%	48%	100%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정신보건센터 운 영	제 주 보건소		6	
	서 귀 포 보건소		1	

□ 사업추진 효과

○ 정신질환자의 등록·치료의뢰 및 직업재활·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에 도모

□ 향후 발전방안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전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사업의 정의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들이 가정방분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여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6	51	199	119	199	42	65	43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2개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한국자활후견기관 제주도지부	김경환	7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김우남	21	

□ 사업추진 효과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신생아 및 산모 건강증진 도모

□ 향후 발전방안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 확대(저소득 층 등)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 사업의 정의

○ 자원봉사센터별 교육·D/B 구축 전문인력 지원으로 인프라 확충

○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 업 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21	21	6	-	-	-	-	-

※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행자부 지침)

□ 참여단체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김 순 택	2명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김 영 호	2명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강 은 영	2명	

□ 사업추진 효과

○ 전문인력으로 자원봉사자 상시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증대

○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로 인적자원의 종합네트웤 구축

□ 향후 발전방안

○ 코디선발 자격 엄격으로 대상자 참여율 하락 및 선발 어려움

○ 코디네이터 선발 중앙의 자격요건 완화 및 센터장 재량 범위확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매니저

□ 사업의 정의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조기정착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IT분야의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매니저	72	97	11	**56**	11	36.1	30.9	100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인원	비고
계	**-**	**-**	**11**	
프로그램매니저	영평마을	김재돈	1	
"	김녕해녀마을	이용안	1	
"	저지예술마을	김진봉	1	
"	유수암마을	문안휴	1	
"	와흘마을	강호권	1	
"	한남마을	고철수	1	
"	감산계곡마을	고성숙	1	
"	상예마을	강택주	1	
"	알토산마을	김진호	1	
"	월평화훼마을	정봉조	1	
"	수산마을	강현건	1	

□ 사업추진 효과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상주배치를 통한 마을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판매관리 등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

○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대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난 해소

□ 향후 발전방안

○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요망.

○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신분에 대한 일원화 방안 검토(자치단체 예산에 편성 지출하는 경우와 지원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형태 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 사업의 정의

○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을 확대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합 계	200	200	12	1	5	0.25	0.25	-
우당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운영	100	100	5	1	5	0.25	0.25	-
탐라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운영	100	100	7	-	-	-	-	-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2개소			
우당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운영	우당도서관	홍세표	24	
탐라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운영	탐라도서관	김성홍	22	

□ 사업추진 효과

○ 주간에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야간이용혜택 부여

□ 향후 발전방안

○ 도서관 야간시간 연장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사업정의

○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생산적 체육복지 실현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생활체육지도자지원	320	320	30	340	30	53.1	53.1	100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30	
생활체육지도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현향탁	8	
〃	제주시생활체육 협의회	고영두	10	
〃	서귀포시생활체육 협의회	김창림	12	

□ 사업추진 효과

○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육성에 기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청소년 체육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

○ 생활체육 인구저변확대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 사업의 정의

○ 문화재, 관광지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생태환경 등에 관한 설명과 해설을 통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	-	331	144	165백만원	129명 (월평균)	-	49.8%	89.6%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	관광정책과	-	-	-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회(회장 강순희) 회원수 157명				

※ 본 사업은 도(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며 사업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도에서 월마다 지급하고 있고, 위에 기재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회는 도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사회단체임

□ 사업추진 효과

○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등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함으로써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 유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기회 제공을 통한 제주관광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이미지를 제고

□ 향후 발전방안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해설사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을 위한 국비 지원 협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07년부터 제주도만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중단

산림서비스 증진

□ 사업의 정의

○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숲길(등산로) 정보망 구축을 위한 숲길현황 일제조사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숲길조사 사업	51	22	5	33	5	45	45	100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5	
숲길조사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3	
숲길조사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2	

□ 사업추진 효과

o 숲길 등산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위치, 거리, 상태, 특징 등)

- 산을 찾는 등산객 들에게 등산로 정보제공

o 숲길 등산로의 보수, 휴식년제 등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향후 발전방안

o 사업비 집행상황 매월 보고로 행정력 낭비 : 분기보고로 조정

산림보호 강화 사업

□ 사업의 정의

○ 산림재해분야(산불・산사태・산림훼손・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재해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07년 예산		07년 지원인원	6월까지 집행예산	6월까지 지원인원	연대비 집행률 (1~6월)		
	국비	지방비				예 산		인원
						국 비	지방비	
산림보호강화사업	258	111	36	161	36	44	44	100

□ 참여단체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종사자 인원	비고
계			36	
산림보호강화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18	
산림보호강화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8	

□ 사업추진 효과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을 활용함으로서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보호 단속활동 효율적 추진 도모

□ 향후 발전방안

○ 인건비가 낮아 지원기피현상이 우려되므로 인건비 상향 요망
(35,000원 → 40,000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17호, 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문화관광부
4. 보건복지부
5. 노동부
6. 여성가족부
7. 기획예산처

제6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受理)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141호, 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별표0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4조제3항관련] : 붙임 참조

별표0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4조제3항관련]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가.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부·기피한 자	제1항	700만원
나. 그 밖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부·기피한 자	제1호	300만원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	
가. 상습적으로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거부·기피한 자	제1호	300만원
나. 그 밖에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거부·기피한 자		100만원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자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상습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300만원
나. 그 밖에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0만원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1조 제2항	
가. 상습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자	제3호	300만원
나. 그 밖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100만원

※ 비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